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아래 "급여암특정 재활치료(단순재활치료)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이하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단 순재활치료) 인정기준"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단순재활치료) 분류표>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단순재활치료)로 분류되는 항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8호, 2023.3.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수가코드 중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 · · · · · · · · · · · · · · · · ·		
의 료 행 위 명 칭	수가코드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1일당]	MM102	
운동치료-등속성운동치료[1일당]	MM103	
압박치료[1일당]	MM190	
복합림프물리치료[1일당]	MM20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암특정재활치료(단순재활치료)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관련법령에 따른 "급여암특정재활치료(단순재활치료) 인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급여암특정재활치료(단순재활치료)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암특정재활치료(단순재활치료)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료행위 당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급여암특정재활치료(단순재활치료)" 진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1조의8 "급여암특정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암특정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

라 함은 암 자체 또는 암 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아래 "급여암특정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 하며, 이하 "급여암특정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 인정기 준"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급여암특정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 분류표>

급여암특정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로 분류되는 항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호, 2023.3.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수가코드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의 료 행 위 명 칭	수가코드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	MM301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MM302
작업치료-단순작업치료	MM111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	MM112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MM113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1일당]	MM114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MZ008
연하장애재활치료	MX141
항문직장및골반근의생체되먹이기치료[1일당]	MX03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암특정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관련법령에 따른 "급여암특정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 인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법 령의 개정으로 "급여암특정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암특정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료행위 당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급여암특정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 진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 다.

- 1.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특약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암특정재활치료(기본물리치료)를 받았을 때: [기본물리]급여암특정재활치료급여금(다만, 1일 1회한, 연간 20회에 한함)
- 2.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특약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암특정재활치료(단순재활치료)를 받았을 때: [단순재활]급여암특정재활치료급여금 (다만, 1일 1회한, 연간 20회에 한함)
- 3.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특약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암특정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를 받았을 때: [전문재활]급여암특정재활치료급여금 (다만, 1일 1회한, 연간 20회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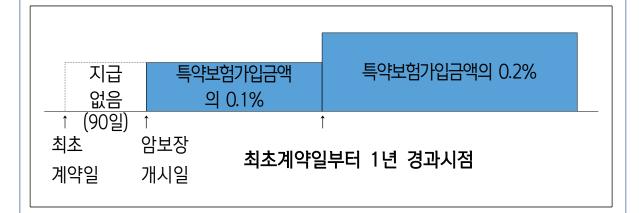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특약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에 의해 납입면제가 된 경우 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이 특약이 해당약관의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가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3호의 경우 "간편심사형"에 한하여,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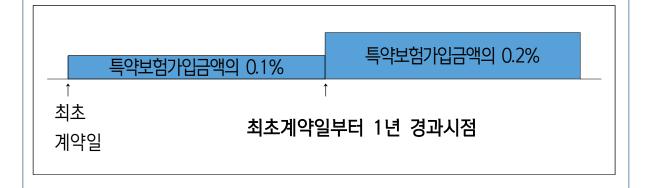
보험금 삭감지급 도해 (간편심사형에 한함)

[기본물리]급여암특정재활치료급여금(1일 1회, 연간 20회에 한함)

- 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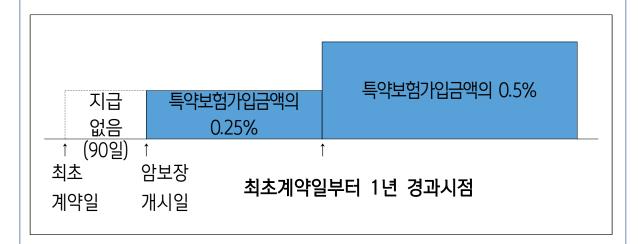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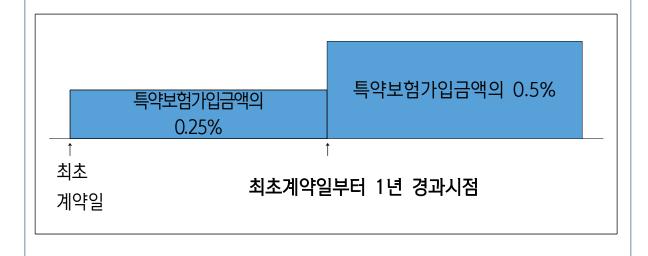


[단순재활]급여암특정재활치료급여금(1일 1회, 연간 20회에 한함)

- 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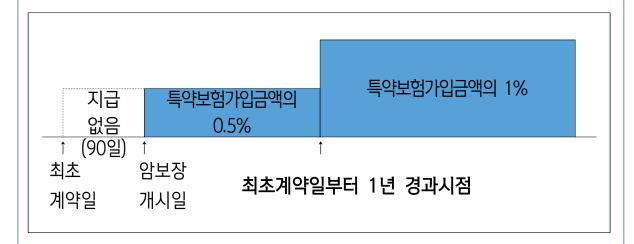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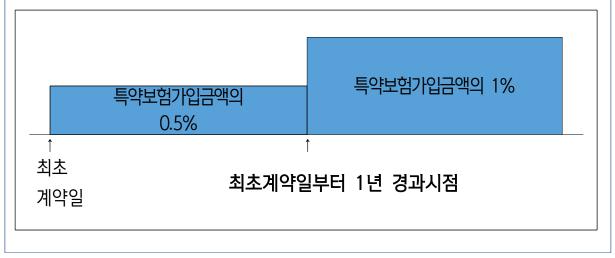


[전문재활]급여암특정재활치료급여금(1일 1회, 연간 20회에 한함)

- 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 ④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3호의 경우 각각 1일 1회 한도를 적용하며, 각각 연간 20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 ⑤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심신상실

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 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

제2-5조 사고증명서

- ① 제1-5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2호에서 말하는 이 특약의 사고증명서는 "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 및 분류코드 기입, 재활치료의 원인 포함),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검사기록 포함),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이 특약은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 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 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 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 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2-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

경할 때 이 특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 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감액 이후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최초 가입 당시에 안내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감액처리에 대한 설명

[감액]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계약자적립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의 해약환급금 지급 예시]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감액전	감액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500만원
감액시점의 해약환급금	400만원	200만원
감액할 때 지급금액	200만원 (= 400	만원 - 200만원)

제2-8조의2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약내용에 상응하는 새 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 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판정기준 제도가 폐지되 는 경우
 -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판정기준 제도의 변경으 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 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 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안내할 경우 특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 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용, 보험료 변경내용, 특약내용 변경 절 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안내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약내용 변경시점의 이 특약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

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 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5조(보험금 등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계산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 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 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계없이 지급금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2-9조의2 "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10조(특약의 무효) 제1항 이외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다만,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1조의3("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함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2-11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 <부표1-1>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 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2-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물리] 급여 암특정 재활치료 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특약보험기간 중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암특정재활치료(기본물리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1일 1회, 연간 20회에 한함)	하여 최조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약보험가
[단순재활] 급여 암특정 재활치료 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특약보험기간 중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암특정재활치료(단순재활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1일 1회, 연간 20회에 한함)	아어 최조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발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25%"를 지급
[전문재활] 급여 암특정 재활치료 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특약보험기간 중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암특정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및 기타이학요법)를 받았을 때 (다만, 1일 1회, 연간 20회에 한함)	(다만, "간편심사형"에 한하여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발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5%"를 지급

※ 1년 미만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이 특약은 그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